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규정

제정	2001. 9. 1.	규칙 제352호
개정	2002. 5.30.	규칙 제381호
	2005. 8.10.	규칙 제458호
	2006. 7.31.	규칙 제482호
	2010. 3.10.	규칙 제528호
	2013. 5.23.	규칙 제627호
	2018. 9.13.	규정 제767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4. 4.23.	규정 제9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학술정보원의 임무는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전산화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연구 및 학습 자료로 제공하고, 교수연구지원, 통합정보시스템 및 학내망을 운영·관리함은 물론 학생들의 컴퓨터 관련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는데 있다.

② 학술정보원(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제3조(조직) ① 학술정보원에는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를 통할하고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4. 각종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추진절차의 간소화 추진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학술정보원운영위원회) ① 학술정보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술정보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며 교무처장, 사무국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보직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정보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정보원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입자료 선정 및 장서구성에 필요한 사항
 4. 학술정보원 발전계획 <신설 2018.9.13>
 5. 학술정보원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13>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서면 혹은 컴퓨터 매체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컴퓨터 매체로 작성 시에는 요약본을 작성한다.

제6조 <삭제>

제3장 자료운영, 관리

제7조(열람) ① 학술정보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4.2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③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교직원, 강사,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개정 2024.4.23.>
 2. 타 대학의 도서관장이 발행한 열람의뢰서를 소지한 자
 3. 그 밖에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24.4.23.>

제8조(출입 및 이용) ① 도서관 출입 및 이용 시 열람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요구가 있거나 자료 대출 시 열람증 또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권수, 기간) ① 자료대출 기간 및 권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1. 전임교원 | 20책 60일 |
| 2. 일반직원, 강사, 조교 | 10책 30일 |
| 3. 대학원생 | 8책 21일 |
| 4. 학부생 | 5책 14일 |
| 5. 삭제 <2024.4.23.> | |
| 6. 삭제 <2024.4.23.> | |
| 7. 그 밖에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원장이 별도로 정함 <개정 2024.4.23.> |

② 대출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납기한 전일지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휴직 및 퇴직
2. 강사의 위촉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3.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의 휴학, 퇴학, 제적

4. 이용기간 만료 <개정 2024.4.23.>

④ 졸업예정자는 졸업 30일 전부터 대출을 중지하고 졸업 20일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반납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

⑥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일 이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대출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⑦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 대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열람) ① 귀중자료는 지정된 곳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은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③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참고자료

2. 정기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자료

④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신설 2024.4.23.>

제11조(제제)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료 대출을 정지한다.

1. 일반자료 :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 2024.4.23.>

2. 60일 이상의 연체 : 180일

3. 자료 무단반출 : 180일

4. 대리대출(양측) : 180일

5. 자료 절취 : 180일

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재학생의 경우 : 수강신청 접수 보류

2. 휴학생의 경우 : 휴(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3. 졸업생, 퇴학생, 제적생의 경우 : 제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보류

③ 교직원 중 퇴직, 전출, 휴직, 해외여행 등 6월 이상 본교를 이탈할 경우 원장에게 대출자료 반납을 확인 후 수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강사 중 위촉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서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졸업생 중 이용기간 만료시(매년 2월 말 기준)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지침에 의해 처리한다.

⑥ 컴퓨터 실습 환경을 저해하는 학생은 사용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출정지 기간은 도서관 근로봉사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4.23.>

제12조(자료변상) 대출받은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변상은 현물(동일자료)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자료가 품질 등의 사유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여야 한다. 단, 유사자료로 변상할 경우에는 최신자료 또는 해당 자료보다

고가품 이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점검) 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료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적 및 폐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료를 제적 폐기할 수 있다.

1.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경우
2. 훼손, 오손 등으로 장서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필요에 의하여 분책 또는 합책하여야 할 경우
4. 자료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원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의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손·망실 자료

제15조(질서유지) ① 열람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소음, 흡연, 집회 등) <개정 2024.4.23.>
 2. 자료의 무단 반출 <개정 2024.4.23.>
 3. 열람증 및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4.4.23.>
 4.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의 훼손
 5. 그 밖에 학술정보원의 운영에 방해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운영, 관리

제16조(정보관리) ① 개발 보급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정보의 입력, 수정, 삭제, 출력 등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 ② 학술정보원에서는 그 정보의 무결성과 비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③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정보의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 이용) ① 학생, 교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이용자는 전산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사용료)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도서관 발전계획

제19조(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방안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 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 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 방향
 3.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시설·예산·도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 ① 총장은 교수와 학생 등의 연구,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학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연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대학 전체 예산의 1.5% 이상을 도서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③ 도서관 기본 도서 수를 재학생 1명당 70책 이상, 연간 증가 책 수는 재학생 1명당 2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정원을 본교 정원 기준으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학술정보원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제21조(협약체결)** ① 학술정보원장은 학술정보원의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정보원 및 유관 기관과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학술정보원은 학술정보원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상호 교류 협력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22조(시행지침)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제352호, 2001. 9. 1.)

-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 규정과 한국체육대학교 전자계산소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381호, 2002.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58호, 2005. 8.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2호, 2006.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8호, 2010.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0호, 2012. 10.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7호, 2013.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7호, 2018.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904호, 2024.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